

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.

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?

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개정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비과세 한도는 금융기관(농·수·축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등)을 합산하여 관리되며 본인 요청에 따라 항상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■ 출자금 비과세한도 변경 방법

- 오산농협 본·지점 방문 신청(본인이 신분증 지참)

■ 유의사항

- 금차 시행되는 출자 비과세 한도 상향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.

현 행	개 정
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○ (대상기관) 농·수·축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○ (대상자) 농어민 조합원 등 ○ (한도) 1천만원 -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한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	☐ 비과세 한도 상향 ○ (좌 동) ○ 1천만원 → 2천만원
○ (적용기한) 2025.12.31	○ (좌 동)

기타 문의사항은 오산농협 총무팀 031-372-2111 연락 바랍니다.

오산농업협동조합